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1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세무 및 법률정보

-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 지정감사인의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출처: 금융감독원, 2021.10.15]

- ◇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추진배경

1 추진배경

-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 %)] ('17) 170/7.8% → ('18) 284/12.7% → ('19) 807/34.7% → ('20년) 1,060/44.5% → ('21e) 1,253/51.6%
-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과 감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2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 기본 방향 >

- ◇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
-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엄중하게 제재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발표('21.10.18)하고
 -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 3 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 '19 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① (제재절차)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하겠습니다.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

② (센터 확대)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처리하겠습니다.

* 예) 감사계획·인력·보수·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 3 자 검증 요구 등

** 신고센터명칭도 「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① 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3)

○ 금감원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arsfssork)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4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 상장협·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합니다.

○ 올해는 협의회 위원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2인)가 추가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어 공표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협의회 관련 문의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94)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시키겠습니다.

○ (오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면, 회계법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고 기업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고 오인

○ (실제)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 부과

□ 아울러,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

3 기대효과

① 모범규준의 제정·시행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③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향후계획

4 향후계획

□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11월 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습니다.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10월 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 용어 설명 >

-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설립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자
- (지정감사)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
- (주기적 지정제) 연속하는 6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 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외감법 §11②)
 -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 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표준감사시간) 감사업무의 품질제고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외감법 §16 의 2)
 - *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 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 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 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전기·당기)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를 말함

별첨 1

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1 추진 배경

□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된 지 3년이 경과되면서 '21년에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

< 상장회사 지정감사 현황 >



□ 지정감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사 보수·시간·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간 분쟁이 해마다 증가

< 지정감사 업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

- 자유선임시 활발히 진행되던 감사인과 회사간 외부감사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조정이 지정감사시 원활하지 못함
- 감사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협의나 근거 자료 제시 요구에 미온적
-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 3의 외부기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설명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 지난 2년간 감사보수 관련 갈등을 적극 중재*하였음에도 감사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기업의 애로는 여전히 상황

* ('19년) 12건 접수, 10건 조정 / 2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
(20년) 7건 접수, 6건 조정 / 1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

◇ 확대된 감사인 지정 제도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회사와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그동안 추진한 감독방안의 성과 및 한계

① 감사 보수 집중 점검

- (내용)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관련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후 금감원·한공회가 감사보수 현황을 점검

<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사례 >

- 지정감사인인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전년도도 동일하게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 감사보수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와 상담센터(상장협·코스닥협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감사인과 조정 실시
- 조정에 불응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의 윤리위 징계를 거쳐 지정취소·감사인 지정제외 접수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
 - * '19~'20년 중 신고건은 대부분 사전조율을 통해 조정하여 한공회 징계 및 제재조치 사례는 없음
- (한계) 시행시기, 분쟁조정범위, 낮은 불이익 조치 가능성 등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았던 측면
 - i) 계약실태 점검의 적시성 부족*으로 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
 - * '19년은 감사계약 체결 기한이 지난 12월 초부터, '20년은 본통지 시점인 11월 둘째주부터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
 - ii) 감사보수 외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
 - iii) 부당한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공회의 징계를 선행요건으로 하여 기업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②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 (내용) 감사인 지정제 확대에 따른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감사인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중('20.3월~)
 - * 전·당기 감사인간 분쟁 발생시 기초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 방식 >

- **구성**
(주관) 외부전문가 3 인(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 회계연구위원장, 회계학회장 (감사인) 전 · 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회사) 경영진 및 감사(감사위원)
- **(개최) 전** · 당기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가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 **(협의회에 따른 조치 감경)** 협의회에서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회계감리 조치 시 최소 1 단계 감경

- 지난 2 년간 35 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
* '20 년 22 건(13 개사), '21 년 13 건(11 개사)의 전 · 당기 감사인간 분쟁을 조정
- **(한계) 협의회에 대한 기업들의 낮은 인지도, 협의회 산업 전문성 부족 등 보완 필요성 제기**
 - i)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구성 · 운영됨에 따라 협의회 존재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인지도**
 - ii) **협의회 개최 요건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미비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움**
 - iii)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Pool 이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곤란**

3 2021 년 지정감사 감독방안

< 기본 방향 >

- ◇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
-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 · 엄중하게 제재**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 **(현황) '19 년부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침을 발표***하고 **감사보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 * ① 표준감사시간 미준수 관련 가이드라인('19.2 월)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 월)
 - ②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 월)
 - ③ 전 · 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를 위한 전기오류수정협의회 설치('20.1 월)
 - ** (1 차) '19.2 월, (2 차) '19.12 월, (3 차) '20.11 월
- **(문제점) 각종 감독지침이 보도자료에 산재되어 있고, 감사인 지정시점 보다 늦은 점검으로 기업들의 인지도 · 활용도가 낮은 측면**

□ (개선방안) 그동안의 감독지침·가이드라인·감사보수 관련 사항을 총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

○ 감사인 지정 예비통보 시점(10.14 일)에 맞추어 발표(10.18 일 예정)하고, 지정 대상 회사 등에 개별 안내하여 회사의 인지도 제고

< 모범규준 주요내용 >

- ①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 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④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⑤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나 지정감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독 강화

□ (현황) '19년부터 감사인 지정 후 감사계약 체결시(11월~12월)까지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을 실시

□ (문제점) 과도한 감사보수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후 제재절차도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들의 활용도가 저조

□ (개선방안) 감사보수 외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를 확대하고, 감사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보완

① (제재절차) 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회·한공회가 공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부과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② (센터 확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처리

* 예) 감사계획·인력·보수·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 3자 검증 요구 등

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 (현황) 지정감사인(당기)이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의견이 다른 경우 한공회에 설치된 「전기 오류수정협의회」를 통해 의견 조율 가능

□ (문제점) 협의회의 인지도, 운영의 체계성, 위원의 전문성 등에서 보완 필요

- ① **협의회 명칭이 전기감사인의 오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기감사인이 협의회 이용을 기피하는 측면**
 - ② **협의회 위원이 3명에 불과하여 다양한 산업과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제한**
 - ③ **협의회가 보도자료에 의해 설치·운영됨에 따라 운영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해* 기업들의 활용이 제약**
- * 신청방법, 개최요건, 협의회 운영방식, 소요기간, 결과통보 방식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개선방안) 전·당기 감사인간 원활한 의견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명칭 변경, 외부위원 확대, 운영방식의 체계화 등 추진**

- ① 협의회 명칭을 「전기오류수정협의회」에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로 변경
- ② 협의회 참여 **외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회계기준원 상임위원과 산업별 지정전문가(Pool 내) 참여를 의무화**
 - * (현행) (3인)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 회계학회장
 - (개선) (5인)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산업별 회계전문가 2인(전체 전문가 Pool에서 회사 산업군에 따라 산업별 지정 전문가를 회계학회장이 지명)
- ③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신청방법, 개최요건, 운영방식 등)을 규정화·발표**하고 기업들에 **개별 안내**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활용도를 제고**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현황) 외부감사인의 저가수입경쟁을 완화하고 적절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제정(19.4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중**
 -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감사계약 체결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 **(문제점) 지정감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
 -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시 감사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며, 기업도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전파된 상황**
- **(개선방안) 표준감사시간의 법적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감사투입시간 산정에 기초로 활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의 성격을 명문화**

< 유권해석 주요내용 >

- ①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
- ②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 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③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고 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조치사항별 향후 계획

□ '21년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일(10.14 일)에 맞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기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개시

○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규정 등은 회사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활용도와 인지도를 제고

< 각 조치사항별 추진 일정 >

구분	추진사항	수행기관	추진일정
가. 모범규준 마련	모범규준 제정 및 시행 (행정지도)	금융위	10.18 일 모범규준(안) 발표 및 행정지도 예고(~10.29 일) → (11 월 초) 행정지도심의위 → (11 월 중) 모범규준 시행
나. 지정감사인 권한 남용 감독강화	계약실패 집중점검 및 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 · 한공회	10.18 일 ~
	외부감사규정 개정 (과도한 감사보수 등 제재 관련)	금융위	'21.12 월 개정안 입법예고 → '22.1 분기 외감규정 개정
다. 전·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지침 제정	한공회	10.18 일 발표 → '21.12 월 중 지침 시행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의미 명확화	표준감사시간 유권해석 발부	금융위	'21.10 월 중 유권해석 발부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무 및 법률정보 등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입니다

세정지원 대상

- 2020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 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 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 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1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자 중 2022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1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조특법 제5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단, 조특법 제24조를 제외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는 '21년 투자분까지만 적용 가능)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증가 비율	10% 이상	20% 이상

*개인사업자는 투자(증가)비율 계산 시 투자사업장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적용

세정지원 내용

- 2020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1.11.30.(화)

투자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5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5 조의 4, 제 25 조의 5 의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2022년부터는 제 24 조만을 적용)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는 제외, 투자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제외

구 분	투자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 제24조)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운수업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5조)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또는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수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오수처리시설, 청정생산시설, 온실가스감축시설 등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5호)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비상대비업무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내진보강시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6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4)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舊 조특법 제25조의5)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기타참고사항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1.1. ~12.31. 중에 종료되는 모든 사업연도(사업연도 종료월 기준)의 수입금액과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투자금액과 증가비율을 계산)
 - * (예시)사업연도가 6개월인 법인으로 '21.6월, '21.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경우, '21.6월말 및 '21.12월말 결산 법인세 신고(경정) 수입금액의 합계를 '2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봄
- 투자확대계획서 서식 2번 ① 투자금액 비율 및 ④ 투자금액 증가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 (예시) 증가비율 21.08% → 21.0%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관할 세무서에서 '21. 11. 1.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중간예납세액은 '20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였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결산 방법에 따라 11.30(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 만명의 납부기한('21.11.30.)을 3 개월 직권연장('22.2.28.)합니다.
-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11 월 19 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 월 19 일부터 시행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 11 월 19 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됨.
 -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
-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 116 조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10, 2021.10.27)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 합병법인)과B법인(피합병법인)은 '20년 12월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 진행(합병등기 '20.12.2. 경료함)
- A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20년 12월 31일

※ A법인 매출, 주주현황 등

1) A법인의 2020년 매출 현황

구분		금액	비고
총매출액		8000억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B법인	1000억	1~11월 합병등기일 전까지 거래
	기타법인	1000억	

2) A법인의 주주현황

주주	합병 전 비율	합병 후 비율
B법인과 특수관계인(지배주주甲)	10%	20%
나머지 주주	90%	80%

3) 합병등기 전B법인의 주주현황

주주	주식비율
A법인	20%
지배주주甲	30%
기타	50%

(질의내용)

- A법인의 사업연도 중B법인이 A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A법인의B 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산입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투자자 1 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2021.09.30)

(사실관계)

- A법인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으로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음.

- A법인은 2019년 12월에 아래와 같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였음.

- 2019년 7월 : 기계장치 매매 계약, 계약금 00억원 지급

- 2019년 12월 : 기계장치 입고 및 시운전 완료, 잔금 00억원*을 타수어음 (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으로 기계판매처에 지급

* A법인이 2019년 12월에 지급한 잔금 00억원은 타수어음(타인발행 약속(전자)어음)을 배서하여 기계판매처에 지급한 것으로서 어음만기(결제)일은 2020년 2월이며, 어음의 만기일인 2020년 2월에 결제됨

(질의내용)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

<답설> 계약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

<을설> 계약금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